

서산 테크노밸리 고운하이츠 우선 분양전환 후 공가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국민	서산시 거주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공공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
일정	24.06.05.(화)	24.06.17(월)	24.06.18.(화)	24.06.24.(월)	24.07.05.(금)~24.07.07.(일)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가입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 <표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공고문 8p)"에 따라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공급순위별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주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주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owoonecity.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05.(수)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건설증형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이며, 임대무기간 5년이 경과되어 우선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 및 공개세대)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15년 2월17일 사용승인을 득한 국민주택이며, 국민주택기금(67.1741형 세대당 53,200,000원), (84.9169형 세대당 69,200,000원)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상환이 이루어진 일부 세대가 존재하니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외부 별도 보수공사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청약자는 시설물(보일러, 벽지,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입주자가 설치한 부합물은 당사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며, 분양가격에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서산시 주택과-18508호 (2024.05.24.)로부터 분양전환 승인된 금액이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산시)은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국민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4.06.17.(월)	24.06.18.(화)	24.06.24.(월)	24.07.05.(금)~24.07.07.(일), 3일간 (10:00~16:00)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사무실 041-664-7223 (주소: 충남 서산시 성연3로 11, 서산테크노밸리고운하이츠 101동 103호)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1년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주택과-20040호(2024.06.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서산테크노밸리 A10b, A11b (성연3로 11)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5~10층 9개동 총 299세대 중 우선분양전환 후 잔여 공개세대 183세대 공급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20일 이후 (※ 정확한 입주일자는 세대별로 확인)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국민 주택	2024000246	01	67.1741	67	67.1741	27.9039	95.0780	28.8075	123.8855	68.9595	97	12
		02	84.9169	84	84.9169	28.6873	113.6042	36.4166	150.0208	87.1740	86	11
		합 계										18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층	공급금액	계약금 10% (계약 시)	잔금 90% (계약 후 60일 이내)
67.1741	97	1	153,400,000 ~ 156,600,000	15,340,000 ~ 15,660,000	138,060,000 ~ 140,940,000
		2	157,550,000 ~ 160,700,000	15,755,000 ~ 16,070,000	141,795,000 ~ 144,630,000
		3~4	161,550,000 ~ 164,850,000	16,155,000 ~ 16,485,000	145,395,000 ~ 148,365,000
		5	164,000,000 ~ 167,350,000	16,400,000 ~ 16,735,000	147,600,000 ~ 150,615,000
		6	164,900,000 ~ 168,250,000	16,490,000 ~ 16,825,000	148,410,000 ~ 151,425,000
		7	165,750,000 ~ 167,350,000	16,575,000 ~ 16,735,000	149,175,000 ~ 150,615,000
		8	163,200,000 ~ 169,000,000	16,320,000 ~ 16,900,000	146,880,000 ~ 152,100,000
		9	165,750,000 ~ 169,000,000	16,575,000 ~ 16,900,000	149,175,000 ~ 152,100,000
		10	163,200,000 ~ 166,600,000	16,320,000 ~ 16,600,000	146,880,000 ~ 149,940,000
		84.9169	86	1	190,900,000 ~ 197,000,000
2	195,950,000 ~ 202,200,000			19,595,000 ~ 20,220,000	178,365,000 ~ 181,980,000
3	201,100,000 ~ 207,550,000			20,110,000 ~ 20,755,000	180,990,000 ~ 186,795,000
4	203,300,000 ~ 207,550,000			20,330,000 ~ 20,755,000	182,970,000 ~ 186,795,000
5	204,300,000 ~ 210,650,000			20,430,000 ~ 21,065,000	183,870,000 ~ 189,585,000
6	205,300,000 ~ 211,700,000			20,530,000 ~ 21,170,000	184,570,000 ~ 190,530,000
7	206,300,000 ~ 212,650,000			20,630,000 ~ 21,265,000	185,670,000 ~ 191,385,000
8	206,300,000 ~ 212,650,000			20,630,000 ~ 21,265,000	185,670,000 ~ 191,385,000
9	206,300,000 ~ 211,700,000			20,630,000 ~ 21,170,000	185,670,000 ~ 190,530,000
10	203,300,000 ~ 205,300,000			20,300,000 ~ 20,530,000	182,970,000 ~ 184,770,000

※ 상기 표는 공급되는 각 타입의 층별 최소금액 ~ 최대금액을 표기하였습니다. 공급호실별 세부금액은 별도 표기 (공고문 14p~19p 참조)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 청약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공급금액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의해 책정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건설자금은 소유권이전시 상환예정이므로 잔금납부시 확인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에서 9년 임대이후 우선분양하여 발생한 공가세대를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 후 주택 내·외부에 대한 일부 보수공사 후 현재 상태로 인계하여 드리며 시설물(디지털도어락, 난방, 도시가스, 수도, 샷시, 도배, 장판, 세대열쇠 등)의 미비, 파손, 노후화, 청소불량, 철거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이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당첨되어 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3.3058 또는 형별면적(㎡)× 0.3025)
- 기타 단지 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주택(세대)개발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세대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V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순위(1순위→2순위) ② 1순위 내 경쟁시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서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③ <표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선정순차 ④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순위별 자격 요건 <table border="1" data-bbox="344 1209 2092 1391"> <thead> <tr> <th data-bbox="344 1209 465 1257">구분</th> <th data-bbox="465 1209 613 1257">주택형</th> <th data-bbox="613 1209 743 1257">순위</th> <th data-bbox="743 1209 2092 1257">자격 요건</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4 1257 465 1391" rowspan="2">국민 주택</td> <td data-bbox="465 1257 613 1391" rowspan="2">전주택형</td> <td data-bbox="613 1257 743 1305">1순위</td> <td data-bbox="743 1257 2092 1305">•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td> </tr> <tr> <td data-bbox="613 1305 743 1391">2순위</td> <td data-bbox="743 1305 2092 139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기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항별·층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구분	주택형	순위	자격 요건	국민 주택	전주택형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기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구분	주택형	순위	자격 요건											
국민 주택	전주택형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기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2순위도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명단 관리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를 결정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1>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40㎡ 초과</td> <td>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전용면적 40㎡ 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구분	내용			
전용면적 40㎡ 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내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부간 중복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후신청분 무효 처리(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항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서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24.(월) ~ 2024.07.03(수)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6.24.(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일정			
구분	계약일정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4.07.05.(금)~24.07.07.(일) (시간 : 10:00 ~ 16:00)	분양사무소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3로 11 (서산테크노밸리고운하이츠 101동 103호)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안내
<p>※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사무실 제출(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p> <p>※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합니다.</p> <p>※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KB국민은행	793301-01-775185	고운주택주식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주소변동사항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분양사무실에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분양사무소 방문청약 접수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제3자 대리시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안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신분증(대리인)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외 대리인 접수 불가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5.)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Ⅶ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VIII 기타

■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야외배드민턴장.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넓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7.5m	2.3m

■ 사업주체 / 시공사 / 건축감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고운주택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9 3층, 4층	200111-0396303
시공사	고운시티아이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2, 드림시티 504호	200111-0057088

■ 감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감리금액(VAT포함)
건축감리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59	160111-0019269	647,152,000원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의무사항 이행 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기기	적용
단열재설치(설계기준 건축부분 의무사항)	-	적합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	적합
열원시스템	개별난방(87%)	적합

■ 분양사무소

분양문의	분양사무실 위치
041-664-7223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1128 고운하이츠아파트 101동 103호

■ 감정평가기관

- (주)제일감정평가 법인 , (주)경일감정평가법인
- 별첨의 공급금액은 위 2개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별첨(공급세대 각 호실별 공급금액)

순번	약식표기	대상세대		주택가격	분양가격(원)	
		동	호수		계약금 (계약시)	잔금 (60일 이내)
1	84	101	101	194,900,000	19,490,000	175,410,000
2	84	101	103	197,000,000	19,700,000	177,300,000
3	84	101	202	202,200,000	20,220,000	181,980,000
4	84	101	302	207,550,000	20,755,000	186,795,000
5	84	101	401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6	84	101	402	207,550,000	20,755,000	186,795,000
7	84	101	404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8	84	101	502	210,650,000	21,065,000	189,585,000
9	84	101	503	210,650,000	21,065,000	189,585,000
10	84	101	504	208,500,000	20,850,000	187,650,000
11	84	101	601	209,500,000	20,950,000	188,550,000
12	84	101	701	210,550,000	21,055,000	189,495,000
13	84	101	702	212,650,000	21,265,000	191,385,000
14	84	101	703	212,650,000	21,265,000	191,385,000
15	84	101	802	209,550,000	20,955,000	188,595,000
16	84	101	803	212,650,000	21,265,000	191,385,000
17	84	101	804	210,550,000	21,055,000	189,495,000
18	84	101	903	211,700,000	21,170,000	190,530,000
19	84	102	101	194,900,000	19,490,000	175,410,000
20	84	102	102	197,000,000	19,700,000	177,300,000
21	84	102	103	197,000,000	19,700,000	177,300,000

22	84	102	104	194,900,000	19,490,000	175,410,000
23	84	102	201	200,100,000	20,010,000	180,090,000
24	84	102	203	202,200,000	20,220,000	181,980,000
25	84	102	301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26	84	102	303	207,550,000	20,755,000	186,795,000
27	84	102	304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28	84	102	401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29	84	102	402	207,550,000	20,755,000	186,795,000
30	84	102	403	207,550,000	20,755,000	186,795,000
31	84	102	404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32	84	102	501	208,500,000	20,850,000	187,650,000
33	84	102	503	210,650,000	21,065,000	189,585,000
34	84	102	504	208,500,000	20,850,000	187,650,000
35	84	102	602	211,700,000	21,170,000	190,530,000
36	84	102	603	211,700,000	21,170,000	190,530,000
37	84	102	701	210,550,000	21,055,000	189,495,000
38	84	102	702	212,650,000	21,265,000	191,385,000
39	84	102	704	207,550,000	20,755,000	186,795,000
40	84	103	103	197,000,000	19,700,000	177,300,000
41	84	103	201	200,100,000	20,010,000	180,090,000
42	84	103	202	202,200,000	20,220,000	181,980,000
43	84	103	203	202,200,000	20,220,000	181,980,000
44	84	103	301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45	84	103	303	207,550,000	20,755,000	186,795,000
46	84	103	304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47	84	103	401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48	84	103	404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49	84	103	503	210,650,000	21,065,000	189,585,000
50	84	103	504	208,500,000	20,850,000	187,650,000
51	84	103	602	210,650,000	21,065,000	189,585,000
52	84	103	603	211,700,000	21,170,000	190,530,000
53	84	103	604	209,500,000	20,950,000	188,550,000
54	84	103	704	207,550,000	20,755,000	186,795,000
55	67	104	101	153,400,000	15,340,000	138,060,000
56	67	104	102	153,400,000	15,340,000	138,060,000

57	67	104	201	157,550,000	15,755,000	141,795,000
58	67	104	301	161,550,000	16,155,000	145,395,000
59	67	104	402	161,550,000	16,155,000	145,395,000
60	67	104	502	164,000,000	16,400,000	147,600,000
61	67	104	602	164,900,000	16,490,000	148,410,000
62	67	104	702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63	67	104	801	163,200,000	16,320,000	146,880,000
64	67	104	902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65	67	104	1002	163,200,000	16,320,000	146,880,000
66	67	105	101	153,400,000	15,340,000	138,060,000
67	67	105	104	153,400,000	15,340,000	138,060,000
68	67	105	201	157,550,000	15,755,000	141,795,000
69	67	105	202	158,950,000	15,895,000	143,055,000
70	67	105	204	157,550,000	15,755,000	141,795,000
71	67	105	302	163,200,000	16,320,000	146,880,000
72	67	105	304	161,550,000	16,155,000	145,395,000
73	67	105	401	161,550,000	16,155,000	145,395,000
74	67	105	404	161,550,000	16,155,000	145,395,000
75	67	105	501	164,000,000	16,400,000	147,600,000
76	67	105	601	164,900,000	16,490,000	148,410,000
77	67	105	602	166,500,000	16,650,000	149,850,000
78	67	105	604	164,900,000	16,490,000	148,410,000
79	67	105	701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80	67	105	702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81	67	105	703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82	67	105	704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83	67	105	802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84	67	105	803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85	67	105	903	166,500,000	16,650,000	149,850,000
86	67	105	1003	164,000,000	16,400,000	147,600,000
87	84	106	102	192,950,000	19,295,000	173,655,000
88	84	106	104	190,900,000	19,090,000	171,810,000
89	84	106	201	195,950,000	19,595,000	176,355,000
90	84	106	202	198,150,000	19,815,000	178,335,000
91	84	106	203	198,150,000	19,815,000	178,335,000

92	84	106	204	195,950,000	19,595,000	176,355,000
93	84	106	301	201,100,000	20,110,000	180,990,000
94	84	106	302	203,300,000	20,330,000	182,970,000
95	84	106	303	203,300,000	20,330,000	182,970,000
96	84	106	304	201,100,000	20,110,000	180,990,000
97	84	106	401	201,100,000	20,110,000	180,990,000
98	84	106	402	203,300,000	20,330,000	182,970,000
99	84	106	403	203,300,000	20,330,000	182,970,000
100	84	106	501	204,300,000	20,430,000	183,870,000
101	84	106	502	206,450,000	20,645,000	185,805,000
102	84	106	503	206,450,000	20,645,000	185,805,000
103	84	106	601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104	84	106	602	207,300,000	20,730,000	186,570,000
105	84	106	603	207,300,000	20,730,000	186,570,000
106	84	106	701	206,300,000	20,630,000	185,670,000
107	84	106	702	208,400,000	20,840,000	187,560,000
108	84	106	703	208,400,000	20,840,000	187,560,000
109	84	106	704	206,300,000	20,630,000	185,670,000
110	84	106	802	208,400,000	20,840,000	187,560,000
111	84	106	803	208,400,000	20,840,000	187,560,000
112	84	106	804	206,300,000	20,630,000	185,670,000
113	84	106	902	207,300,000	20,730,000	186,570,000
114	84	106	903	208,400,000	20,840,000	187,560,000
115	84	106	904	206,300,000	20,630,000	185,670,000
116	84	106	1002	204,300,000	20,430,000	183,870,000
117	84	106	1003	205,300,000	20,530,000	184,770,000
118	84	106	1004	203,300,000	20,330,000	182,970,000
119	67	107	101	154,900,000	15,490,000	139,410,000
120	67	107	102	156,600,000	15,660,000	140,940,000
121	67	107	201	158,950,000	15,895,000	143,055,000
122	67	107	202	160,700,000	16,070,000	144,630,000
123	67	107	203	160,700,000	16,070,000	144,630,000
124	67	107	303	164,850,000	16,485,000	148,365,000
125	67	107	402	164,850,000	16,485,000	148,365,000
126	67	107	403	164,850,000	16,485,000	148,365,000

127	67	107	601	166,500,000	16,650,000	149,850,000
128	67	107	603	168,250,000	16,825,000	151,425,000
129	67	107	701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30	67	107	704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31	67	107	802	169,000,000	16,900,000	152,100,000
132	67	107	803	169,000,000	16,900,000	152,100,000
133	67	107	901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34	67	107	902	169,000,000	16,900,000	152,100,000
135	67	107	1001	164,850,000	16,485,000	148,365,000
136	67	107	1003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137	67	108	103	154,800,000	15,480,000	139,320,000
138	67	108	104	153,400,000	15,340,000	138,060,000
139	67	108	202	158,950,000	15,895,000	143,055,000
140	67	108	203	158,950,000	15,895,000	143,055,000
141	67	108	204	157,550,000	15,755,000	141,795,000
142	67	108	303	163,200,000	16,320,000	146,880,000
143	67	108	401	161,550,000	16,155,000	145,395,000
144	67	108	402	163,200,000	16,320,000	146,880,000
145	67	108	502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146	67	108	503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147	67	108	504	164,000,000	16,400,000	147,600,000
148	67	108	601	164,900,000	16,490,000	148,410,000
149	67	108	602	166,500,000	16,650,000	149,850,000
150	67	108	603	166,500,000	16,650,000	149,850,000
151	67	108	701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152	67	108	702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53	67	108	703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54	67	108	704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155	67	108	801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156	67	108	802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57	67	108	804	163,200,000	16,320,000	146,880,000
158	67	108	902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59	67	108	903	166,500,000	16,650,000	149,850,000
160	67	108	1001	163,200,000	16,320,000	146,880,000
161	67	108	1003	164,000,000	16,400,000	147,600,000

162	67	109	101	154,900,000	15,490,000	139,410,000
163	67	109	102	156,600,000	15,660,000	140,940,000
164	67	109	104	154,900,000	15,490,000	139,410,000
165	67	109	204	158,950,000	15,895,000	143,055,000
166	67	109	301	163,200,000	16,320,000	146,880,000
167	67	109	401	163,200,000	16,320,000	146,880,000
168	67	109	403	164,850,000	16,485,000	148,365,000
169	67	109	501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170	67	109	503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71	67	109	601	166,500,000	16,650,000	149,850,000
172	67	109	602	168,250,000	16,825,000	151,425,000
173	67	109	603	168,250,000	16,825,000	151,425,000
174	67	109	701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75	67	109	702	169,000,000	16,900,000	152,100,000
176	67	109	704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77	67	109	801	164,850,000	16,485,000	148,365,000
178	67	109	804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79	67	109	902	168,250,000	16,825,000	151,425,000
180	67	109	904	167,350,000	16,735,000	150,615,000
181	67	109	1002	165,750,000	16,575,000	149,175,000
182	67	109	1003	166,600,000	16,660,000	149,940,000
183	67	109	1004	164,850,000	16,485,000	148,365,000